

#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



## 1

### 필요한 신고 수속

#### 1-1

#### 주소 (거주지) 의 신고 절차

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.

##### 신고가 필요한 사람

- 체류카드 소지자 (중장기체류자)
- 특별영주자
- 일시적으로 신변보호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
- 출생 또는 일본국적상실에 따른 경과체재중인 사람

#### (1)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

- 거주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할 때는 체류카드 (후일에 발급받는 사람은 여권) 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.
-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도 필요합니다.
- 전입신고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카드에 등록하는 주소도 동시에 등록이 완료됩니다.
- ② 주민표가 작성됩니다.
  -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.
  - 거주상황 등을 증명할 때 필요로 하는 주민표 사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(유료)
- ③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를 알려줍니다.
 

※마이넘버: 일본에서의 사회보장, 세금, 재해대책 수속을 할 때 본인의 신분확인을 곧바로 할 수 있는 12 자리 번호

##### 자세한 사항은 2 마이넘버 제도를 참조하십시오.

- ④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넘버 안내와 함께 송부되는 발급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 (2) 이사를 할 경우

- ①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
  - 이사 전  
→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
  - 이사 후  
→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새 주거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
- ② 동일한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 
이사 후 14 일 이내에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
- ③ 해외로 이주할 경우  
이사하기 전에 현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 제출



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https://www.soumu.go.jp/main\\_sosiki/jichi\\_gyousei/c-gyousei/zairyu/english/move-in\\_move-out.html](https://www.soumu.go.jp/main_sosiki/jichi_gyousei/c-gyousei/zairyu/english/move-in_move-out.html)



### 1-2

## 혼인신고



### 일본에서 결혼을 할 경우

- 시구정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요건이 갖추졌다고 인정되면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져 혼인이 성립됩니다.

## (1) 혼인신고시 구비서류

일본인	호적등본
외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※ 본국 주일대사관·(총)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(주1).</li> <li>·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 제출시 전부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(주2).</li> </ul>

(주 1) 국가에 따라서는 이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, 그럴 경우에는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(주 2)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. 번역자는 본인이어도 됩니다.

## (2) 본국에서의 유효성

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혼인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·(총)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 1-3 이혼신고

###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

- 이혼하고자 하는 양자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거주지나 국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합니다.

### (1) 본국에서의 유효성

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이혼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·(총)영사관으로 문의하십시오.

### (2) 마음대로 이혼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

상대방(일본인)이 마음대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에 제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대방(일본인)의 본적지 또는 당신의 주소지 시구정촌에 가서 이혼신고서 불수리 신청서를 제출해 두면 이혼 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## 1-4 사망신고

###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

- 친족이나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고서 제출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이 신고는 사망한 곳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시구정촌에 제출하십시오.

### (1)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
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- 이 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(2) 체류카드의 반납

사망한 외국인의 체류카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14 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지고 간다.
-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.

보내는 곳: 〒 135-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 - 7 - 11  
 東京港湾合同庁舎 9 階  
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おだいば分室  
 (봉투 겉면에 ‘在留カード返納 (체류카드 반납)’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)

### 1-5

## 인감등록

### 인감등록이란

- 시구정촌에 인감 (도장) 을 등록 (신고) 하는 수속을 인감등록이라고 합니다.
-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



## (1) 인감등록의 절차

### 등록신고에 필요한 것

- 인감등록신청서
  - 인감 (도장)
  - 본인확인서류 (마이넘버, 체류카드, 운전면허증 중에서 한 가지)
- ※ 등록이 끝난 후 인감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- ※ 인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.



## (2) 인감등록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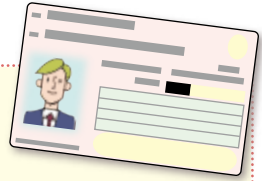
- 인감등록된 인감 (도장) 임을 증명하는 것
- 인감등록증 등을 관할 시구정촌에 제시하고 신청하십시오.
-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# 2 마이넘버 제도

## 2-1 마이넘버 제도란

마이넘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.

- ① 연금육아수당,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
- ② 해외에 송금할 때 또는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
- ③ 은행 계좌를 만들 때



마이넘버를 사용할 때에는

- ① 그 번호가 명백히 당사자 본인의 마이넘버인지
- ② 당사자 본인이 여권 등과 같이 얼굴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확인합니다. 그러므로 당사자의 마이넘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

## 2-2 마이넘버 카드

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IC칩이 내장된 카드입니다.

### (1) 기재 사항

앞면 :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, 얼굴사진

뒷면 : 마이넘버



앞면



뒷면

### (2) 언제 사용하는가

- 공적인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
- 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사용
- 자녀에 대한 수당이나 보육원 (어린이집) 입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
-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시 사용 (휴일에도 가능.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취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)

- 건강보험증으로 사용

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https://www.mhlw.go.jp/stf/index\\_16743.html](https://www.mhlw.go.jp/stf/index_16743.html)



### (3) 신청 방법

일본에서의 거주지가 정해지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마이넘버 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(일부 제외).

처음 신청할 때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, 얼마 후에 마이넘버 카드 발급신청서가 자택으로 송부됩니다. 발급신청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① 스마트폰으로 신청

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고 발급신청서의 QR 코드로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

#### ② PC로 신청

디지털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고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

#### ③ 우편으로 신청

발급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송부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는다

#### ④ 증명사진용 촬영기로 신청 (대응 기종만)

터치 패널을 조작하여 요금을 넣고 발급신청서 QR 코드를 바코드 판독기에 대고 읽힌다.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사진을 찍어 송신한다.

#### ⑤ 거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청 (일부 제외)

발급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제출한다.

※ 시구정촌 창구에서 발급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면 마이넘버 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https://www.kojinbango-card.go.jp/ko-kofushinse/>



### (4) 수령 방법

신청 1 개월 후에 시구정촌에서 엽서가 배달됩니다.

이 엽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마이넘버 카드를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https://www.kojinbango-card.go.jp/ko-uketori/>



## 2-3 마이넘버 카드 사용상의 주의점

-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-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합니다.
  - 체류기간을 연장(갱신)한 후에는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의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십시오.
- ※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.
- ※ 체류 신청 시 발생하는 특례기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월간(특례기간)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새로운 체류카드를 수령한 후 다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새로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https://www.soumu.go.jp/main\\_sosiki/jichi\\_gyousei/c-gyousei/zairyu/english/basic\\_resident\\_registration\\_card.html](https://www.soumu.go.jp/main_sosiki/jichi_gyousei/c-gyousei/zairyu/english/basic_resident_registration_card.html)



## 2-4 기타

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마이넘버 제도

<https://www.digital.go.jp/policies/mynumber/>



### 마이넘버 카드

<https://www.kojinbango-card.go.jp/ko/>



전화문의도 받습니다.

### 콜센터

(월~금 9:30-20:00, 토·일·경축일 9:30-17:30)

◎일본어

**전화 0120-95-0178**

◎영어·중국어·한국어·스페인어·포르투갈어

**전화 0120-0178-27**

